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중장년층의 안정된 일자리 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나. 사업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 이상 만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 최대 10명)

다.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 ①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②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라. 사업규모 : 총 480명

마. 지급기준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후	12개월 후	연간지원액
고용유지 의무기간		6개월	12개월	
지급액	중소기업	1인 월 80만원×6개월 (총 480만원)	1인 월 80만원×6개월 (총 480만원)	총 960만원
	중견기업	1인 월 40만원×6개월 (총 240만원)	1인 월 40만원×6개월 (총 240만원)	총 480만원

* 지원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바. 지급형식 : 계좌이체(법인통장)

사. 지급방법 : 선착순 접수 우선 심사 및 지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아. 기업 모집기간

구분	접수 및 심사일정
전체 모집기간	‘24. 3. 28.(목) ~ ‘24. 5. 20.(월) 18:00
1차 기업심사	(기업 신청기간) ‘24. 3. 28.(목) 09:00 ~ ‘24. 4. 5.(금) 16:00까지
	(재단 심사기간) ‘24. 4. 8.(월) ~ ‘24. 4. 12.(금)
2차 기업심사	(기업 신청기간) ‘24. 4. 5.(금) 16:00 ~ ‘24. 4. 19.(금) 16:00까지
	(재단 심사기간) ‘24. 4. 22.(월) ~ ‘24. 4. 26.(금)
3차 기업심사	(기업 신청기간) ‘24. 4. 19.(금) 16:00 ~ ‘24. 5. 3.(금) 16:00까지
	(재단 심사기간) ‘24. 5. 7.(화) ~ ‘24. 5. 10.(금)
4차 기업심사	(기업 신청기간) ‘24. 5. 3.(금) 16:00 ~ ‘24. 5. 20.(월) 18:00까지
	(재단 심사기간) ‘24. 5. 20.(월) ~ ‘24. 5. 24.(금)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사업량 달성 시, 조기 마감되어 3~4차 심사 미운영(잡아바어플라이 사이트 참고)

○ 지원기업 승인결과 통보 : 심사 차수별 심사기간 내 개별 안내

가. 참여기업 자격

○ 본사(주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

○ 참여자격 제외대상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 확인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경영형태 및 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⑥ 2024. 1. 1.부터 공고개시일(2024. 3. 28.)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 ①~⑥ 또는 “26” ③
- ⑦ 본 사업과 동일 신규채용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 정부 및 타 기관 지원금 (예시)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 ⑨ 1년 이내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단,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지원 가능)
- ⑩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나. 참여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자

* 2024.1.1.기준 연령 산정, 출생일 1964.1.2.~1974.1.1. 사이의 구직자

** 사업 참여일(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59세 이하였으나, 이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가능

○ 참여자격 제외대상

① 지원 기업(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단,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불승인 시 지원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미만인 근로자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2년 이상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다.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12개월간 고용유지

〈고용유지 기간 기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채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조건충족	
	기업채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조건충족

- (근로자수) 사업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와 지원금 지급 요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지급대상 근로자는 제외)가 유지 혹은 증가한 경우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피보험자 수 유지 및 증가 여부 판단 기준〉

- ▲ 고용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일(사업계획서 접수일) : '24.3.26. (피보험자 수 5명)
- ▲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받은 날 : '24.4.26.(적합직무 채용 승인인원 : 3명)
- ▲ A근로자 고용일('24.5.14.), B근로자 고용일('24.5.20.), C근로자 고용일('24.5.27.)
- ▲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A,B,C 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24.3.26.)과 동일(5명)하거나 증가(6명)했다면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
- ▲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A,B,C 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24.3.26.) 기준(5명) 보다 감소한 4명이라면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불인정
- ▲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피보험자수는 유지 또는 증가하였으나 A근로자가 '24.11.20. 퇴사하였으면 지원금은 B,C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

-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참고]100대 적합직무)

* 100대 적합직무 이외의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고용형태) 정규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

* 단, 회사내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 인정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必

- (채용임금)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 생활임금은 통상임금 의미하며, 道 생활임금 단가 시급 11,890원 적용

구분	주 35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	월 183시간	월 209시간
월 임금(이상)	2,175,870원	2,485,010원
지원금	지원금 100%	지원금 100%

○ (지원한도) 참여신청서 피보험자수(고용보험가입 기준)의 30% 이내

* 소수점 이하 버림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 최대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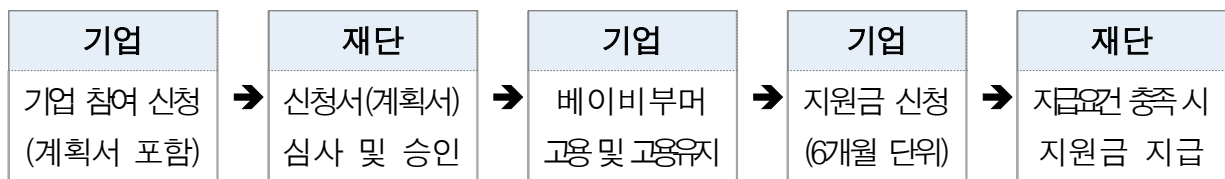
○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① 지원 기업 승인 이후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③ 「경기도 생활임금」에 따른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3

신청방법

가. 기업 신청 절차



○ 참여기업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수

○ [필수]제출서류 * 증빙자료 스캔 후 파일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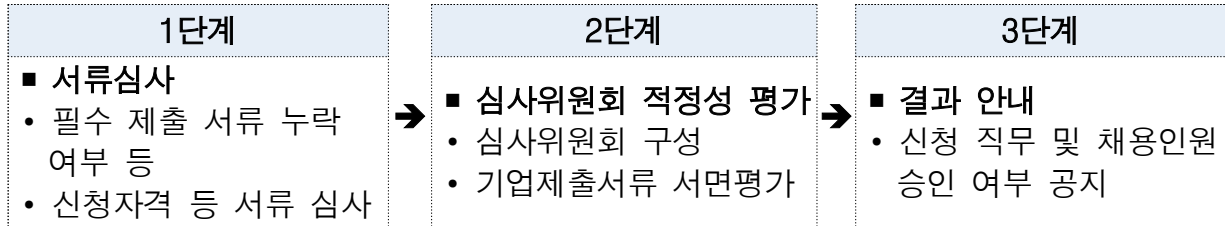
- ① [온라인 작성]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② [붙임1 서식]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③ [붙임2 서식] 기업확인서 1부
- ④ [붙임3 서식] 기업개요, 근로자 활용계획 및 기타 정보 1부
- ⑤ [붙임4 서식]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⑥ [붙임5 서식]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1부
- ⑦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
- ⑧ 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 ⑨ 2023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
- ⑩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⑪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⑫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⑬ 2024. 1. 1.부터 공고개시일(2024. 3. 28.)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1부

○ (선택)제출서류

① 가점 적용을 위한 기타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각 1부

* 기업 인증 증명서 사본 및 근로자 친화정책(사내 복리후생제도) 규정 및 계획서 등 관련 증빙

나. 기업 선정 절차



○ 서류심사

- (심사항목) 참여자격요건, 채용계획서의 적합직무 및 채용인원 등 적격 심사

○ 지원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 적정성 평가

- (심사방법) 서면심사
 - (평가항목)

기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선정의 필요성
■ 고용안정성: 정규직비율 ■ 재정건전성: 부채비율 ■ 가점사항 - 주요활동실적 (기업인증실적 등)	■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필요성(사업참여 의지 등) ■ 적합직무 채용자의 활용 계획 ■ 구체적 업무 내용 ■ 근로자 친화 복지 제도 도입 및 실시여부 등	■ 지역, 산업 특성 및 고용유지, 장기근속 가능성 등

· (공통) 업태, 기업규모, 피보험자수 등 기업현황

· (가점적용*) 중앙정부 각종 우수인증 기업,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기관 주관 우수인증 기업

*** 가점적용 : 주요 활동 실적**

- ☞ 중앙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 경기도 및 道 공공기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

- (감점 적용)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적용

***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다. 기업 선정 후 절차

- 근로계약 체결 후 즉시 재단 통보, 14일 이내 서류 제출
- **[필수]제출서류**

- ① 사업주 확인서 (선정기업 대상으로 양식 별도 제공 예정)
- ② 근로계약서
- ③ 신규채용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④ 신규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⑤ 신규채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계약 체결일 이전 1년 포함)
- ⑥ 기타 근로계약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베이비부머 고용 및 고용유지

- 채용계획서의 승인된 적합직무 및 채용인원 범위 내에서 채용

* 추후 적합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 1회 변경 가능

라. 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수

○ (제출서류)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월별임금대장(급여명세서)
- 임금 지급증빙서류(급여이체내역서 등)
- 실근로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출근부 등)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기업 통장사본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검토 후 지급요건 충족 시 6개월 지원금 지급
 - * 1~6개월 고용유지 : '24년 지급 / 7~12개월 고용유지 : '25년 지급
- 신청서류 불충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불가

4

지원중단 및 선정 취소

가. 기업 선정 취소 사유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참여자격 제외 기업 및 근로자인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 * 선정기업과 근로자간에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 등 지원 제외 대상자 채용 등
- 지침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선정 이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불합리성 등에 따라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을 통한 구제 추진
- [이의신청 검토기준] 원칙적으로 법위반 시 이의신청 배척
종합 검토후 승인여부 채택
 - ①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실수 등 요인
 - ② 법위반 경위가 경영상 위기 및 어려움에 따른 한계 소명
 - ③ 법위반사실 개선·치유기간 및 외부 피해 회복의 노력도

나. 지원금 지원 중단 사유

- 신규 인력 운영이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지원 기간 중 참여기업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본사(주사업장)를 이전하는 경우
- 신규 채용인력을 대상으로 타 일자리사업 등에서 기업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간의 고용이 유지된 후 사업주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급을 재단이 안내한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 금액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5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따른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참여안내 및 문의

- 이메일 문의 : re50@gjf.or.kr
- 카카오톡 채널 문의 : 2024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 카카오톡 검색: (@적합직무) / URL : http://pf.kakao.com/_mbEWG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2

참고

경기도형 적합직무 100개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521	여행 서비스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022	경영·인사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026	경영지원 사무원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027	회계·경리 사무원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623	물품이동장비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032	금융·보험 사무원	703	배관공
033	금융·보험 영업원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817	운송장비 조립원
135	정보보안 전문가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822	판금원 및 제관원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4	용접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1	전기공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13	유치원 교사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22	법률 사무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304	간호사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305	영양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307	보건·의료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411	작가·통번역가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415	디자이너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901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511	미용 서비스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